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89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이광희 · 안태준 · 송재봉
박해철 · 서미화 · 전진숙
김문수 · 이주희 · 임미애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뢰죄에 대해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기준 금액이 높고 처벌이 관대하여 부패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공직자의 비리는 액수와 무관하게 국가 및 사회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이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뢰액의 기준을 하향하고 병과하는 벌금의 하한선을 기존 수뢰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여 비리 엄단을 통한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1억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천만원 이상 1억원”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천만원 이상 5천만원”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배”를 “3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 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 (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 이 가중처벌한다.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 ----- ----- ----- ----- ----- ----- -----.
1. 수뢰액이 <u>1억원</u> 이상인 경우 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 <u>5천만원</u> ----- ----- -----.
2. 수뢰액이 <u>5천만원</u> 이상 <u>1억</u> <u>원</u>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 <u>3천만원</u> 이상 <u>5천</u> <u>만원</u> ----- -----.
3. 수뢰액이 <u>3천만원</u> 이상 <u>5천</u> <u>만원</u>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 <u>1천만원</u> 이상 <u>3천</u> <u>만원</u> ----- -----.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 한다)에 수뢰액의 <u>2배</u>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한	② ----- ----- ----- ----- ----- <u>3배</u> ----- -----.

다.	
----	--